

고용노동부, 인천 동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 지정

- 철강업 위기를 겪는 인천 동구의 고용위기 우려에 적극 대응 -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4.13.~4.15.)를 개최해 인천광역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 요건이나 지원 수준 등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인천광역시 동구 사례는 지난 4.2일부터 장관 주재로 비상고용노동 상황점검회의를 매주 진행하여 지역·산업별 고용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건의가 접수된 사례이다. 김영훈 장관은 즉시 지정을 검토하여 지역의 고용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통상환경 악화, 중국발 공급과잉, 저탄소 전환 압박 등으로 철강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 내 주요 기업 공장이 폐쇄되고, 가동률을 낮추는 등 생산이 위축되고 고용이 둔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즉각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지정기간은 인천광역시 동구가 '26.7.1일자로 폐지되고 현행 인천 중구지역 일부와 통합되어 제물포구로 행정구역이 개편될 예정인 상황을 고려하여 '26.6.30일까지로 지정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6.7.1일 행정구역 개편 이후 제물포구에 대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건의가 있는 경우 지정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지역 고용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중동상황 등 추가적인 악재로 지역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고용 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고용 회복을 지원하여 지역의 어려움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지역별 고용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황을 적시에 포착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지영철 (044-202-7404)
		담당자	사무관	최서현 (044-202-7413)



참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개요

- (목적)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 직업훈련, 생계안정 등 지원
- (지정기준) ①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지역에서 ②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어 ③시급한 대응이 필요할 것
 - * ❶ 재난: 지역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게 예측치 못한 휴업 등 발생(우려)
 - ❷ 주된산업: 주된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3개월 연속 감소
 - ❸ 선도기업: 300인 이상 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 구조조정 계획 등 발생
 - ❹ 예외조항: 그 밖에 급격한 고용감소가 우려된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지정단위) 시·군·구(일반구 포함) 단위로 하되, 지역 고용여건 등에 따라 여러 개의 시·군·구를 묶어서 지정 가능
- (지정절차)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정 건의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 (지정기간) 최대 12개월

지원사업	구분	평상시	선제대응지역	위기지역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휴업수당 1/2~2/3	휴업수당 6/10~8/10	휴업수당 2/3~9/10
사업주훈련지원	훈련비단가	40%~100%	70%~130%	90%~150%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여부	지원대상 ×	지정지역으로 사업장 이전·신설·증설 후 거주자 고용시 통상임금 1/3~1/2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5년간 300만원	5년간 500만원	
	자부담률	15~55%	0~20%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소득요건	중위소득 100%	지정일 전 3개월부터 퇴사한 실업자 대상 소득요건 면제	지정일 전 12개월부터 퇴사한 실업자 대상 소득요건 면제
직업훈련생계비대부	대부한도	1천만원	2천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대부한도	2천만원	3천만원	
	융자기간	최대 5년	최대 8년	
	소득요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체불근로자생계비용자	대부한도	1천만원	1.5천만원	2천만원